

서 울 고 등 법 원

제 4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02노3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피고인 A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알선수재)}

피 고 인 1. B

2. A

항 소 인 피고인들 및 검사

검 사 김해수, 조영수

변 호 인 변호사 이정락, 법무법인 바른법률 담당 변호사 홍지욱 (피고인 B를 위하여)

변호사 정성철, 변호사 이백수, 변호사 박희태, 법무법인 광장 담당 변호서 송흥섭(피고인 A을 위하여)

원 심 판 결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2002. 1. 14. 선고 99고합118, 119(병합) 판 결

판 결 선 고 2003, 7, 16.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피고인들

(가) 원심은 C의 검찰 및 법정 진술, D, E의 각 진술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나, ① 우선, C의 검찰 진술은 그가 1998. 10. 2.경 체포 당시는 물론이고 1회 피의자신문조서를 받을 당시에도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 선임권에 대한 고지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진술을 하였을 뿐더러 체포되어 대구지방검찰청으로 호송되는 과정이나 호송 후 조사 당시 수사관으로부터 갖은 욕설과 협박 및 생명에 위협을 느낄 정도의 가혹행위를 당하였고, 모두 33회에 걸쳐 검찰에 소환되어 평균 12시간 이상 조사를 받거나 대기함으로써 면회도 금지당하였고 변호인 접견도 방해를 받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임의성이 없어 증거능력이 없고, C가 자신이 피고인으로 된 뇌물공여 및 배임수재 재판에서 한 법정진술도 그 진술 당시 이미 모든 것을 자포자기한 심정인데다가 검찰에서 기소 이후에도 수십 차례 소환하여 심리적 억압을 가하는 등으로 억압된 상태가 지속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임의성이 없으며, ② C는 피고인들에게 돈을 주었다는 진술을 번복한 점, 검찰에서 C, E, D이 사전에 진술에 대한 의논을 거쳐 진술한 점, E, D의 진술은 주로 C로부터 보고를 받아 알았다는 것이어서 C가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하고 있는 이상 그들의 진술도 신빙성이



없을 뿐더러 이 사건 F로부터 수령한 뒷돈(이 뒷돈에서 이 사건 뇌물이 지급되었다.)의 사용처를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고 있는 점, D이 피고인 B에 대한 증뢰 당시 피고인 B의 사무실의 구조 및 복장에 대한 진술이 사실과 다른 점, D이 피고인 A에 대한 증뢰 당시의 상황에 관한 진술이 모순되는 점, D, E의 각 진술은 그들이 자신의 배임수재 및 뇌물공여 사건에 대한 처벌을 가볍게 하거나 형사소추에 대하여 면제받기 위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없음에도 원심이 위와 같이 증거가 될 수 없는 증거들을 채택하여 피고인들을 유죄로 처벌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증거의 취사선택을 잘못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A의 예비적 주장

피고인 A은 이 사건 금원을 교부받은 사실은 없지만, 가사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금원을 교부받은 것으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위 C는 맨 처음 검찰진술에서, E, D은 원심에서 모두 선거자금으로 지원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청탁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것은 아니라고 하는 점에서,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에 해당될지언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 3조소정의 알선수재죄가 성립될 수 없는데도 원심이 알선수재죄로 처벌한 것은 위법하다.

(2) 검사(피고인 B에 대하여)

C는 검찰 이래 1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G 공원지역으로 학교이전을 추진하기 시작하면서 지역 국회의원들의 도움을 받아야 할 상황이었고, 더구나 피고인 B는 H까지 역임한 당시 여당의 중진의원이었으므로 더욱 가까이 접근할 필요가 있어지구당 부위원장이 되었으며 부위원장이 되면서 곧바로 위 피고인에게 G 공원지역으로의 학교이전을 부탁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B 또한 C가 학교이전사업을 성



사시키기 위하여 위 지구당 부위원장으로 들어온 점, C로부터 위와 같은 부탁을 받은 점 등을 인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에서도 'C가 학교 이전 문제를 염두에 두고 이에 관한 도움을 받을 의도로 당시 학교가 소재하고 있던 곳의 지역구 국회의원인 피고인 B의 지구당 부위원장의 직책을 맡게 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나아가, E의 검찰 및 1심 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B가 C로부터 위와 같은 부탁을 받고 본건 금 1,000만 원을 받기 이전인 1996. 3. 초순경 I고 입학식에 참석하여 학교시설의 노후화 정도를 확인한 바가 있고 그 자리에서 재단이사장 E로부터 학교이전에 도움을 달라는 부탁을 다시 받고 도와주겠다고 약속한 사실이 있는 바 이에 대하여는 피고인 B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 B는 선거사무장을 통하여 C에 대하여 1억 원이라는 거액의 자금지원을 요청한 사실을 알 수 있는 바, 한편 위 피고인이 위와 같이 위학교 재단이사 C뿐만 아니라 재단이사장 E로부터도 학교이전 부탁을 받은 점, C가 재단이사 자격이 아닌 개인자격으로는 위 피고인에게 금품을 제공할 이유가 없고 C 스스로위 돈은 자신의 돈이 아니라 재단이사장의 돈이라는 것은 일관하여 인정하고 있는 점,이와 같이 학교이전 청탁을 전제로 부위원장이 된 C가 위 피고인에게 제공하는 금품은 C 개인 재산이 아니라 위 학교재단 이사장의 재산일 것이라는 것은 객관적으로 보아도 자명한 상황 하에서 위 피고인이 C에게 거액의 금품을 요구한 것은 결국 학교이전사업을 매개로 C 개인이 아닌 학교재단측에 거액의 금품을 요구한 것이라고 보아야할 것이고, 그 결과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1996. 3. 중순경에 위 피고인이 위 C로부터 1차로 금 1,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더구나, 당시 C는 위 학교재단에서 (주)F에 학교부지를 매도하면서 받은 뒷돈 중 일부를 관계기관 공무원 등에게 로비자금으로 사용하기로 위 E, D과 서로 의논하였고, 그 결과 C는 재단이사장 E로부터 로비자금으로 3억 원 이상을 책정받아 관계자들에게 로비를 하였으며, 위 피고인에 대한 본건 금품 교부도 이러한 로비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점은 C, E, D이 검찰 및 1심 법정에서일관되게 진술한 바와 같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본건 금 1,000만 원은 C가 단독으로 결정하여 혼자 전달하였다고 할 수는 없고 재단이사장 등과 상의한 후 전달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또한 위 돈은 어디까지나 C가 위 학교 재단이사의 자격으로 재단이사장의 돈을 전달한 것이지 C가 자신의 개인 자금을 부위원장 자격으로 위 피고인에게 전달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또한, 원심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비록 본건 금품을 교부하는 그 순간에는 구체적인 청탁이나 학교이전문제를 거론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본건 금품 교부일로부터 길게는 수개월 전부터 짧게는 불과 10억일 전까지 계속하여 위 피고인이 C로부터 학교이전 청탁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재단이사장 E로부터도 같은 청탁을 받은 사실은 위에서본 바와 같이 E, C의 검찰 및 원심 법정 진술에 의하여 인정될 뿐만 아니라 위 피고인 또한 이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위 금 1,000만 원을 교부하는 순간에 구태여 학교이전문제를 재차 거론할 필요까지는 없는 상황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위 금 1,000만 원은 단순한 정치자금 내지 선거자금이 아니라 위 학교재단에서 학교이전에 도움을 받기 위한 대가로 위 피고인에게 우선 1차로 교부한 것임이 명백하고 위 피고인 또한 이러한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것이며 사정이 이와 같다면 위 돈을위 피고인이 직접 받았는지 아니면 피고인의 선거캠프를 통하여 접수하였는지 등의 돈



의 전달 형식에 관계없이 뇌물임이 명백하고 위 피고인 또한 뇌물성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임이 명백함에도 원심이 판결 이유에서 무죄라고 밝힌 것은 원심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검사)

피고인들은 본건 범행 당시 국회의원 또는 국회의원 후보자의 지위에 있었던 사람들로서 고도의 청렴성과 성실성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그 지위 및 직무와 관련하여 거액의금품을 수수한 점, 피고인들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하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점, 기타 이 사건의 여러 정상을 참작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피고인 B: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 A: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1. 피고인 B는 1985. 4.부터 1988. 4.까지 제12대 국회의원(전국구)으로, 1988. 4.부터 1992. 5.까지 제13대 국회의원(J선거구)으로, 1992. 5.부터 1996. 5.까지 제14대 국회의원 (J선거구)으로, 1996. 5.부터 2000. 5.까지 제15대 국회의원으로 재직하면서, 1992. 10.부터 1998. 8.까지 국회 K위원회 소속 위원으로 활동하는 한편, 1994. 12.부터 1995. 12.까지 초대 H을 역임하였던 바,

국회 K위원회 위원으로서 교육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인 학교교육, 평생교육 및 학술에 관한 사무와 관련하여 의안, 청원 등의 심사,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사무 전반에 관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국정감사, 국정조사에 필요한 서



류의 제출, 증인의 출석과 증언, 의견진술 요구권 등을 행사하고, J선거구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소속 지역구 주민이나 학교 등 기관, 각종 단체의 의사를 반영한 입법 또는주요정책을 결정, 추진하고, 지역구의 현안 전반에 관련된 주민들의 여론을 조성, 전달및 조정하며, 지역구 주민이나 학교 등 기관, 각종 단체의 여론을 청원의 형태로 접수하여 이를 국회에 소개하고 그 청원을 담당하는 소관 위원회에 출석하여 청원의 취지를 설명하는 권한 및 이와 관련하여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 의견을 개진하는 등의 권한을 행사하고, 일반 국회의원으로서 국정 전반에 걸친 사항에 대하여 국무위원, 정부위원 등에 대한 출석, 답변요구, 정부에 대한 서면질의, 질문, 현안질문, 국민의 의사에 따른 입법 또는 주요 정책결정 및 청원을 국회에 소개하는 권한 등을 행사하는지위에 있는 자인바,

가. 1996. 3. 중순경 서울 L 소재 M정당 J선거구 지구당 사무실에서 학교법인 N의이사장 E 및 위 학교법인 재단이사인 C로부터 '위 학교법인 소유의 서울 O 소재 I고 및 P중학교를 같은 구 G 소재 공원부지로 이전하고자 하니 의정활동, 지역구활동 등을 통하여 도움을 주고, 또한 서울시, Q구청 등 관계기관 공무원에게 부탁을 하는 등 영향력을 행사하여 위 공원부지를 해제하여 학교를 이전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건네주는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고,

나. 같은 달 1996. 3. 31.경 같은 장소에서 위 E와 위 C 및 위 I고의 서무과장으로서 위 E의 장남인 D으로부터 위 가. 항과 같은 청탁과 함께 건네주는 현금 4,000만 원을 교부받아 위 피고인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2. 피고인 A은 1992. 5.부터 1995. 11.까지 제14대 국회의원(R선거구)으로, 1996. 3. 26. 같은 지역구에 S정당 후보로 등록한 후 당선되어 같은 해 5.부터 2000. 5.까지 제15대



국회의원(R선거구)으로, 2000. 5.부터 현재까지 제16대 국회의원(R선거구)으로 재직하고 있는 자인바,

가. 1996. 3. 말경 서울 T 소재 S정당 R선거구 지구당 사무실에서 위 학교법인의 이사인 C가 '위 학교법인 소유의 서울 O 소재 I고 및 P중학교를 위 피고인의 지역구인 같은 구 G 소재 공원부지 중 일부를 해제하고 학교용지로 지정하여 그 곳으로 이전하고자 하니 위 업무의 주무관청인 서울 Q구청, 서울시청 등 관계공무원에게 부탁을 하여 주고, 특히 서울 Q구청장은 피고인과 같은 S정당 소속으로 친분관계가 있으니 영향력을 행사하여 위 공원용지로 학교를 이전할 수 있도록 알선하여 달라'는 청탁의 취지로 건네주는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고,

나. 같은 해 4. 초순경 같은 장소에서 위 C가 위 가항과 같은 청탁의 취지로 건네주는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아,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들은 검찰 이래 이 사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C, D, E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여 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다. 원심의 판단

(1) 위 공소사실 1.의 나항 및 2항에 대하여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에서 자세히 설시한 바와 같이, 위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今C, D, E의 각 검찰진술 및 D, E의 원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 ④대구지방법원 98고합751, 789(병합), 937(병합), 938(병합), 99고합7(병합) 사건(C의 배임수재 및 C가 뇌물을 공여한 공무원



들에 대한 뇌물공여 사실 등에 대한 형사사건으로 이하에서는 'C의 배임수재 등 사건' 이라고 한다.)에서의 C의 법정진술, 따대구지방법원 98고합346, 355(병합), 369(병합), 380(병합), 383(병합), 384(병합), 385(병합), 435(병합), 520(병합) 사건{주식회사 F의 회장 이었던 U 등에 대한 횡령 등 사건, 학교법인 N의 이사장인 E 등에 대한 배임수재에 대한 형사사건으로 이하에서는 'E의 배임수재 등 사건'이라고 한다\의 제7회 공판기일 에서의 C의 증인으로서의 진술이 전부라고 전제한 후, ① C의 진술에 관하여, C, D이 F에 기존 학교부지를 매각하고 정식 매매대금 외에 뒷돈을 받아 그 뒷돈으로 로비자금 을 조성한 뒤 피고인들과 관계기관 공무원 등에게 로비를 할 필요성을 느끼고 D과 C 가 그 역할을 분담하기로 한 과정에서부터 C가 피고인들 및 관계기관 공무원 등에게 접근하게 된 과정, 이들에게 전달할 돈을 준비하는 과정, 전달한 돈의 액수, 돈을 전달 한 시기와 장소 및 방법, 돈을 전달할 당시의 구체적인 정황 등에 관한 C의 위 각 진 술은 구체적일 뿐더러 객관적인 합리성이 있을 뿐 아니라, 수회에 걸친 위 각 진술은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거의 일관되어 있어 별다른 모순점을 찾아볼 수 없고, 여기에 위와 같은 진술 경위와 진술과정, 위 각 진술이 기재된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 서 등의 형식, C의 학력과 경력, 직업, 지능 정도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C의 검 찰 진술은 폭행, 협박이나 회유 등에 의한 것이라거나 달리 임의성이 없는 진술이라고 볼 수 없으며, 나아가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다가 C가 1998. 11. 2. 'E의 배임수재 등 사건'에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하여 진술하면서도 위 검찰진술과 같이 F로부터 뒷돈을 받은 사실과 피고인들에게 돈을 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C의 배임수재 등 사건' 에서도 C는 위와 같이 뒷돈을 받은 사실과 그 뒷돈으로 로비자금을 조성하여 피고인 들과 관계기관 공무원 등에게 로비한 사실을 전부 시인하였으며, 위 사건에서 C에게



배임수재 및 뇌물공여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는데도 이에 대해 항소도 하지 않아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점,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D, E의 일관된 진술도 C의 검찰진술과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C의 검찰진술은 임의성이 있 음은 물론 신빙성이 높다고 할 것이고, ② 다음 D의 검찰 및 법정진술의 신빙성에 관 하여, D의 검찰 및 법정진술 과정 및 그 내용을 보면, 진술내용 자체가 합리적일 뿐 아니라 거의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고, 또 D은 이 사건 법정에서, 1998. 9. 12. 검찰에 출석하기 전에 E의 변호인이나 신문보도 등을 통해 피고인들이나 다른 관계기관 공무 원 등에 대한 로비내역이 조사대상이 되리라는 것은 예상하고 있었는데, 그 날 검사가 진술의 신빙성을 높일 목적으로 E를 만날 기회를 주지 않은 상태에서 진술을 하게 하 였고, 따라서 E가 피고인들에 대한 로비내역을 진술하였는지 확신할 수 없어 진술을 꺼리다가 결국 사실대로 진술하게 되었으며, 검찰진술시 검사가 피고인들에게 돈을 준 사실을 시인하는 경우 선처를 받게 해주겠다는 등의 방법으로 회유를 하거나 협박을 한 적은 없고, 신문 방법에 있어서도 피고인들을 특정해서 신문하지는 않았다고 검찰 진술의 동기와 경위에 관하여 진술하고 있으며, D이 위와 같이 E를 만나지도 않은 상 태에서 첫 진술을 하면서 피고인들에게 전달한 돈의 액수, 돈을 준비하는 과정, 돈을 전달하는 시기, 장소, 방법, 전달할 당시의 구체적인 정황을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고, D이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도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D 의 검찰 및 법정진술은 모두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며, ③ E의 검찰진술 및 법정진 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E의 검찰 및 법정진술도 전체적으로 일관성이 있고, E가 로비 를 직접 담당하지는 않아서 피고인들 및 관계기관 공무원 등에게 로비한 내역을 구체 적으로 알고 있지 못한 상태에서 한 진술임을 감안하면 합리성이 있다고 할 것이며,



나아가 E는 원심 법정에서, 검찰진술시 검사가 피고인들에게 돈을 준 사실을 시인하는 경우 자신의 배임수재 사건에서 선처를 받게 해주겠다는 등의 방법으로 회유를 하거나 협박을 한 적은 없고, 신문 방법에 있어서도 피고인들을 특정해서 신문하지 않았으며, 다만 F로부터 받은 뒷돈의 정확한 액수와 그 사용내역을 밝히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진술하게 된 것이라고 검찰에서의 진술 동기나 경위에 대해서 진술하고 있고, 또한 1998. 9. 12. 첫 진술시 검사가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 D과 이 사건에 관한 이야기를 나눌 기회를 주지 않고 진술토록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돈의 검찰 및 법정진술 역시 모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위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위 공소사실 1.의 가항에 대하여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위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C의 검찰진술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 'C의 배임수재 등 사건' 및 'E의 배임수재 등 사건'에서의 C의각 진술, D, E의 검찰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B가 C로부터 금1,0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은 인정되는 바, 뇌물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직무와 관련된 청탁의 대가로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것이 인정되어야 하고 뇌물공여자는 물론 수수자도 대가성을 인식하고 뇌물을 수수하여야만 뇌물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대가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뇌물공여자와 수수자와의 관계, 뇌물이 전달될 당시의 정황, 뇌물의전달 방법과 시기, 뇌물 전달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C, D, E의 검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각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C는 학교 이전 문제를 염두에 두고 이에 관한 도움을 받을 의도로 당시 학교가 소재하고 있던 곳의 지역구 국회의원인 피고인 B의 지구당 부위원장 직책을 맡게 되었으나, 위와



같이 1996. 3. 중순경 피고인 B에게 1,000만 원을 주게 된 것은 지구당 부위원장 직책 을 맡아 지구당을 출입하던 중 선거사무장이 선거자금이 부족하다면서 먼저 도움을 요 청하기에 부위원장 자격에서 선거자금으로 이를 준 것이고, 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이 1,000만 원을 주면서는 '어려운데 선거자금으로 보태 써라'고 말하였을 뿐 구체적인 청 탁을 하거나 학교이전 문제를 거론하지도 아니한 사실, 위 1,000만 원을 전달할 당시에 는 피고인들에게 합계 5,000만 원 및 3,000만 원을 각 제공하기로 의논하기 전이어서 C가 단독으로 결정하여 혼자 전달한 것이었고, 이에 관하여 E나 D에게 사전에 이야기 하거나 보고한 적도 없으며, 또 피고인 B에게 1,000만 원을 직접 건네주려고 하자 4.000만 원을 전달할 당시와는 달리 피고인 B가 직접 받지 않고 선거사무장인지 여직 원인지에 접수하라고 하여 이에 따라 접수한 사실, 지구당 부위원장들은 주로 지역 내 기업인들로서 지구당 운영자금이나 찬조금을 납부하기도 하고 4·11 총선 당시 다른 부위원장들도 거의 1,000만 원 이하이기는 하나 몇백만 원 정도씩 선거자금을 낸 사실 등이 각 인정되는 바, 이와 같은 피고인 B와 C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서의 관계, 위 금원 수수의 경위와 정황, 수수된 금원의 액수, 위 금원 수수가 공개적, 공식적으로 이 루어진 사정에다가, 당시가 4·11 총선이 임박한 선거운동기간이었던 점을 더하여 보 면, 위 1,000만 원은 C가 선거를 계기로 피고인 B와 친분관계를 맺을 목적으로 제공한 정치자금 내지 선거자금이라 할 것이지, 구체적인 청탁의 대가로 제공된 뇌물로는 보 기 어려우며, 위와 같은 전후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1,000만 원을 수수할 당시 피고 인 B가 위 금원이 직무와 관련된 청탁의 대가로 제공된 뇌물임을 인식하였다고 볼 수 도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로 기소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를 유죄로 인



정하였으므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음을 알 수 있다.

- 라.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이 법원의 판단
 - (1) C, E의 각 진술의 임의성에 대하여
 - (가) 먼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① C는 1998. 10. 2. 긴급체포되어 'C 배임수재 등 사건'으로 그해 10. 20. 공소제기되어(C의 피고인 A에 대한 뇌물공여 사건은 1998. 12. 30. 대구지방법원 98고합938호로 공소제기됨) 그 사건의 변론이 종결된 4회 공판기일(1999. 2. 3.) 다음날에 보석으로 석방될 때까지(판결선고는 1999. 2. 13.)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모두 33회에 걸쳐 검찰에 소환되었는데, 그 중 1998. 10. 7.부터 11. 2.까지는 일요일을 빼고 매일 나가다시피 하여 총 21회 검찰로 소환되었고, 'C 배임수재 등 사건'으로 기소되기까지는 12회 소환되었지만, 이 중 아무런 조사를 하지 않은 날이 7회이고, 기소된 이후 21회 소환되었으면 서도 이 중 아무런 조사를 하지 않은 날이 17회이고, 심지어 그 중 3회는 C가 자신의 사건에 대한 공판기일 또는 중인심문기일에도 검사에게 소환되었다(원심의 대구교도소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참조, 공판기록 270쪽).

순번	검사 소환일시	귀소시간	비고	순번	검사 소환일시	귀소시간	비고
1	98. 10. 7. 09:00	24:40	2회 피신	18	98. 10. 28. 09:00	13:00	V 사건 피신
2	8. 09:00	20:30	3회 피신 및 자술서	19	30. 09:00	17:30	
3	9. 09:00	17:10		20	31. 09:00	13:30	
4	10. 09:00	13:30		21	11. 02. 09:00	19:00	중인신문
5	12. 09:00	02:10		22	12. 09:00	17:10	
6	13. 09:00	01:10	4회 피신	23	20. 13:00	17:00	
7	14. 13:00	18:40		24	23. 09:00	12:50	
8	15. 09:00	18:20	5회 피신	25	12. 01. 13:00	17:50	
9	16. 09:00	19:00	6회 피신	26	02. 13:00	19:40	1회 공판
10	17. 09:00	14:00		27	10. 09:00	21:30	피고인1과



							대질
11	19. 09:00	20:10		28	15. 13:00	19:30	
12	20. 09:00	18:50		29	22. 13:00	20:15	D과 대질
13	22. 09:00	19:40		30	99. 01. 05. 13:00	17:40	
14	23. 09:00	18:40		31	18. 09:00	17:00	
15	24. 09:00	13:30		32	19. 09:00	18:40	
16	26. 09:00	01:30	V과 대질	33	02. 03. 09:00	13:00	4회 공판
17	27. 09:00	12:50					

② C가 검찰에 소환된 날 중 특히 1998. 10. 7.에는 24:40, 같은 달 12.에는 02:10, 같은 달 13.에는 01:10, 같은 달 26.에는 01:30에 각 구치소에 돌아와 잠깐 눈을 붙이고 새벽 6시에 일어나 다시 검찰에 불려 나가는 등 잠을 제대로 잘 수 없는 날이 여러 날 계속되어 수면부족으로 혼미한 상태에서 새벽에 검찰청 계단을 내려가다가 굴러 넘어져서 발가락 골절상을 당해 걸음을 제대로 못 걸을 정도였고, 소환된 대부분의 날은 별다른 조사가 없거나 간단한 조사만 한 채 구치감에 홀로 대기함으로써 고독감과 불안감에 싸였으며, 지병인 고혈압으로 고생하고 있었던 데다가 구치소에서 피부질환(옴)에 걸려 엄청난 고통을 받았다(C의 원심 및 당심 진술, 당심에서 중 제 14 내지 16호증으로 제출한 C에 대한 각 진단서 및 진료확인서 참조).

③ C는 배임수재 범행으로 구속되어 조사를 받으면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검찰에 소환되는 바람에 W정당 인권위원장인 X 변호사도 교도소에서는 C를 제대로 면회하지 못하여 대구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부탁하여 특수부장과 담당검사를 통하여 C를 검사실에서 면회하는 등 C의 배임수재 사건의 변호인인 Y 등 변호사는 물론 가족들이 구치소로 면회를 갈 수 없어 사실상 면회가 금지되었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침해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는데, 검찰에서는 여러 차례 C의 처에게 '검사실로 오면 면회를 시켜 주겠다'고 전화를 하여 검사실에서 처를 면회하도록 하여 처로부터 가



족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전해 들었는바, 그 내용은 C의 딸 초등학교 친구의 아버지집과 C의 친구인 Z의 집을 수색하였다는 것이고, 한편 C는 위 'E의 배임수재 등 사건' 등 다른 사건의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서도 법정에 나가기 전에 담당 검사실로 불려 가서 '저번에 이렇게 했으니까 말을 바꾸지 말아라. 확실하게 해라. 여기서 이렇게 하면 위증이 된다.'는 등의 이야기를 듣기도 하였다(증인 C, X의 원심및 당심에서의 각 진술, 증인 Z의 당심에서의 진술, 위 사실조회 회신 등 참조).

④ C는 원심 제2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채택되어 소환되었으나, 소재불명으로 구인 영장조차 집행되지 않다가 1년 9개월여 지난 원심 제18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임의출석하여 검찰 및 'C의 배임수재 등 사건'의 법정에서의 진술의 임의성 및 내용을 부인하면서, 대구로 압송되어가던 중 AA 휴게소에서 수사관들이 '너 같은 파리목숨 하나죽이는 것은 아무 것도 아니니 똑바로 해라. 당장 죽여서 묻어 버리겠다'는 식으로 위압감을 조성하고, 고속도로 갓길에 정차한 후 '이 새끼 물부터 먹여야 된다'고 하면서 끌어내리는 척하였고, 대구로 압송되어 1998. 10. 3. 피의자신문시에도 뚱뚱한 수사관이 끊어진 대걸레 자루를 들고 뒤에서 서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겁을 먹었다고 진술하고 있고(원심 공판기록 928면), 당심 법정에서도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면서 연행된 당일 저녁에 피의자 신문을 받는 동안 배임수재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의 추궁을 받았지만 순순히 시인하여 밤 10시경 조사를 마쳤고 그 이후부터 새벽 4시경까지 이 사건 중뢰 사건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추궁을 받았는데, 수사관이 암시하는 대로 피고인 B에게 5,000만 원, 피고인 A에게 3,000만 원을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⑤ C는 검찰조사 당시 검사가 "피의자는 이 건으로 긴급체포된 후 D, E 등과 대질 조사는 하지 않았지만, C로 하여금 두 사람과 장시간 대면하고 서로 얘기할 기회를 가



진 후에 두 의원에게 각 3,000만 원과 5,000만 원을 주었다고 진술하였나요"라는 물음에 "네,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하였고(피고인 B에 대한 수사기록 6책 1권 560쪽 = 피고인 A에 대한 수사기록 6책 1권 481쪽), E도 원심 법정에서 위 면담 당시에 "C는 보고한 사실이 없다고 변명하였고, 자신은 보고받은 적이 있다고 하면서, C에게 너도 책임져야지 누가 떠안느냐는 이야기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일방, 변호인의 'C는 자기는 보고한 기억이 없는데 E나 D이 그렇게 맞추었을 것이라고 추측성 진술을 하니까결국 중인과 C의 이야기를 맞추기 위해서 대면을 시켜 준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아니하였고(공판기록 551면), 당시 W정당 인권위원장으로 있던 X 국회의원은 당심에서 '처음 대구교도소에서 C를 접견하였을 때에는 문제가 된 학교이전과관련해서 피고인들에게 돈을 준 사실이 없다고 분명히 말하였으나, 검찰에서 돈을 주었다고 이야기를 한다는 말을 듣고 다시 한 번 더 만났는데 그 때 C가 상당히 불안하고 초조해 하는 것을 느꼈는데 대구지방검찰청 특수부장검사실에서 C를 다시 만나 학교이전과 관련해서 돈 준 사실이 있느냐고 다시 묻고 돈 준 사실이 없다고 하자 특수부장이 C에게 상당히 화를 냈다'고 진술하고 있다.

⑥ E는 AB생으로서 1992. 남편인 AC이 사망하기 전까지는 가정주부로서 지내다가 남편이 사망한 후인 1992. 3.경부터 N 재단이사장 직을 맡아 오던 중 이 사건 배임수 재로 1998. 6. 26. 구속되었는데, 구속되기 전 넘어지는 바람에 오른쪽 팔목이 부러져서 집스를 한 상태로 구속이 된 상태에다가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못한 상태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배임수재 사건의 변론이 종결된 7회 공판기일(1998. 11. 2.) 다음날에 보석으로 석방될 때까지(판결선고는 1998. 11. 23.로서 변론종결 다음날에 보석허가가 된 것은 위 C의 경우와 동일함) 다음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두 37회에 걸쳐 검



찰에 소환되어 조사를 받았는데, 이 중 7회만 이 사건 증뢰사건 및 'E의 배임수재 등사건'에 관하여 조사를 받았을 뿐 25회는 아무런 조사를 받지 않은 채 검찰청 구치감에 대기하였으며, 'E 배임수재 등 사건'의 재판기일 6회 중 5회에 걸쳐 검사에게 소환됨으로써 사실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면회가 금지되는 결과를 가져왔음에도 검사는 여러 차례 아들인 D을 불러 검사실에서 만날 수 있게해 주었다(원심의 대구교도소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및 E의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등 참조).

순번	기기 시청이기	귀소시간	비고	순번	71 11 ኢሕዕ1 11		비고
世也	검사 소환일시	귀소시간	1177	七世	검사 소환일시	귀소시간	비끄
1	98. 6. 29. 09:00	20:59	배임수재	20	98. 9. 05. 09:00	13:20	10 mm
2	7. 09. 13:00	19:11	상동	21	07. 09:00	22:50	4회 공판
3	10. 13:00	19:00	상동	22	09. 09:00	18:50	
4	11. 09:00	14:20		23	10. 13:00	19:50	
5	13. 09:00	19:15	1회 공판	24	11. 09:00	17:45	-
6	14. 09:00	20:30		25	12. 09:00	23:13	증뢰진술 조서
7	15. 09:00	18:10		26	16. 09:00	18:25	200
8	16. 09:00	19:30		27	17. 13:00	19:15	
9	18. 09:00	13:20		28	25. 09:00	20:40	
10	20. 09:00	18:15		29	29. 13:00	19:25	증뢰 피신
11	27. 09:00	17:25	2회 공판	30	10. 02. 09:00	18:24	
12	8. 04. 09:00	19:30		31	08. 09:00	20:10	C와 대질
13	17. 09:00	상동	3회 공판	32	09. 13:00	16:50	***************************************
14	28. 09:00	22:10		33	12. 09:00	20:45	
15	29. 09:00	14:10		34	13. 09:00	19:33	C와 대질
16	31.09:00	21:33	-	35	16. 09:00	18:40	
17	9. 02. 09:00	18:55		36	17. 09:00	13:40	6회 공판



18	03. 13:00	19:10	37	23. 09:00	18:20	1
19	04. 13:00	18:40				

(나) 무롯 임의성 없는 진술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취지는, 허위진술을 유발 또는 강요할 위험성이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진술은 그 자체가 실체적 진실에 부 합하지 아니하여 오판을 일으킬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진위 여부를 떠나서 진술 자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위법 부당한 압박이 가하여지는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한 것이므로, 그 임의성에 다툼이 있을 때에는 그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이고 구체 적인 사실을 피고인이 입증할 것이 아니고 검사가 그 임의성의 의문점을 해소하는 입 증을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10. 8. 선고 2001도3931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위 인정사실과 같이, ① 뇌물공여자로 지목된 자가 배임수재 등 다른 사건으로 구속된 상태에서 구속된 이후 그들의 배임수재 등 사건의 변론종결일까지 거의 매일 또는 몇 일 걸러 한 번씩 검찰에 소환되었고, 소환되어서도 진작 자신들의 중뢰 혐의나 배임수재 혐의에 대한 조사는 몇 일 되지 않고 대부분 구치감에서 대기하였으며, 자신들의 다른 사건에 대한 공판기일에도 검찰에 소환되어 대기하였고(특히 C에 대한 조사내용 중 AD으로부터 뒷돈을 받은 경위와 내역 및 그 사용처 부분에 대한 수사 및 위 학교를 서울 G 소재 공원부지로 이전하기 위하여 Q구청 도시과장인 V에게 1996. 5. 초순경부터 3회에 걸쳐 현금 250만 원 및 미화 1,000달러를 주고, 당시 Q지역구 출신 서울시 의원인 AE에게 1995. 6.경 서울 AF 소재 위 AE의 선거사무실에 D과함께 찾아가 현금 1,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에 대하여는 C가 처음부터 모두 자백하고 있는 것들이고 V도 검찰 조사시 처음부터 위 사실을 자백하였으며(위 수사기록 6책 3권 613면 이하), AE는 제1회 피의자 신문시에는 이를 부인하고(당시 C, D과 대질신문



함, 위 수사기록 6책 4권 45면 이하), 제2회 피의자 신문시에는 800만 원만 받았다고 진술하였으나(위 수사기록 6책 4권 69면 이하), 첫 재판기일에 자신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모두 자백한 점을 알 수 있어, C가 이 사건 증뢰 혐의에 대한 조사만을 위하여 위와 같이 여러 차례에 걸쳐 장시간 소환되었다고 볼 수 없다.], 위 C는 수감생활 중 피부질환(옴)과 발가락 골절상을 입게 되었고, 위 E는 다소 노령인데다가 구속 전 다친 오른팔에 깁스를 하여 고통을 받고 있었으며, 나아가 뇌물공여자로 지목된 C, E, D 등 이 피의자신문 또는 참고인 조사를 받기 전에 진술 내용까지 의논한 정황이 보였다면, 그와 같은 소환의 횟수와 빈도, 조사시간 등으로 보아 과도한 육체적 피로와 수면 부 족, 심리적 압박감 속에서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C, E는 수시로 검찰에 소환되 어 사실상 변호인의 접견 및 가족의 면회를 차단당한 후 장시간 대기실에 기다리도록 하다가 검찰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 가족에게 연락하여 면회를 시켜주는 등 편 의를 제공하였는바, 그와 같은 행위는 검사와 부당한 인간관계의 형성이나 회유의 수 단 등으로 오용될 우려가 있고, 또 거꾸로 그러한 편의의 박탈 가능성이 심리적 압박 수단으로 작용할 수도 있는 점, ③ C, E는 위와 같이 자신들의 배임수재 등 사건으로 기소된 이후 그 각 사건의 변론종결 다음날까지 구속 상태가 유지된 상태에서(판결선 고만 앞두고 변론종결 다음날에 보석허가가 되는 것도 늘 있는 일이 아니다.) 심지어 공판기일 내지 증인신문기일에도 검사에게 소환되었고, 이 경우 C는 검사에게 여러 가 지로 회유를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어 'E의 배임수재 등 사건' 및 'C의 배임수재 등 사 건'에서의 그들의 진술도 단지 그 진술이 공개된 법정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임의성에 대한 의문이 해소되었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기간 동안의 C, E의 검찰 진술은 물론 'E의 배임수재 등 사건' 및 'C의 배임수재 등 사건'에



서의 각 진술도 그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다고 할 것이다.

(다) 검사는 원심에서 C, E의 검찰 진술의 임의성을 담보하는 자료로서 1998. 10. 13. 그들이 신문 받는 과정을 촬영한 비디오 테이프를 제출하여 검증하면서 그들이 당시 협박이나 회유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임의로 진술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공판기록 1078면 이하), 원심의 비디오테이프 검증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당시 처음 조사를 시작하면서부터 검사가 C 등에게 물어 보고 계장이 그 옆에서 조서 정리를 하면서 그모습을 비디오로 촬영을 한 것이 아니라, C에 대한 제4회 피의자신문조서(D, E 각 대절)를 먼저 작성한 후에 그 피의자신문조서의 주요 내용을 고지하여 주고 열람을 하게한 후 진술자들의 동의를 얻어 그 조서의 내용을 다시 한번 문고 답하면서 촬영한 비디오테이프라고 검사 스스로 위 검증기일에서 주장하고 있는 점(공판기록 1079쪽)에 비추어, 이로써는 검사가 그 임의성에 대한 의문점을 해소하는 입증을 다하였다고 보기어렵다.

또한, 검사는 당심에서 제출한 의견서에서, C의 친구인 Z의 집에 대한 압수수색은 이 사건과 전혀 다른 사건으로 전혀 다른 시기에 실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C가 원심 및 당심에서 친구의 집까지 수색하였다는 사실을 그의 처로부터 전해듣고 심리적 압박 감으로 이 사건 뇌물공여 사실을 자백하였다는 진술을 탄핵하고자 하나, 검사 스스로 압수 수색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 다른 사건과 수색 일시를 밝히고 있지 않을뿐더러 C 및 Z에 의하여 압수수색을 실시한 경찰관으로 지목된 AG 경위도 그 진술서에서 그별개 사건의 압수수색 사실을 밝히고 있지 않고 있는 반면, C는 1998. 10. 3.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서 F로부터 받은 뒷돈 50억 원 중 20억 원은 1995. 6.경에 4회에 걸쳐 D과 같이 AD에게 찾아가 5억 원씩 모두 현금으로 받았고, 나머지 30억 원은 1995. 10.



정부터 1997. 4.경까지 나누어 받았는데, 이는 2억 원 내지 3억 원을 제외하고는 모두수표로 받아 AH은행 AI지점에 자신의 계좌와 친구 Z 등 5명의 차명계좌(1998. 10. 8. 작성한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에서는 Z 등 8명의 차명계좌라고 하였음)에 입금하였다가 인출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검사는 이 진술에 터잡아 계좌추적을 하였고 그 일부를 제시하면서 C를 신문하였음을 알 수 있고(1998. 10. 8.자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다만 그계좌추적 결과는 기록상 전혀 나타나 있지 않다.), 중인 Z은 당심에서 C가 잡혀간 후추석연휴(1998. 10. 3.부터 10. 6.임)가 지난 어느 날 경찰관 3명이 밤 늦게 자신의 집에와서 C와 관계되는 서류가 있느냐고 질문하면서 노트와 같은 장부 등을 수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C가 차명계좌를 진술한 시점과 중인 Z의 진술 및 계좌추적 결과를 제시하고 조사한 시점 등을 종합하면, Z의 집을 수색한 목적은 C가 진술한 차명계좌등을 찾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오히려 위 C 및 Z의 각 진술이 더욱 신빙성이 있게 되어 이로써는 임의성의 의문점을 해소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할 것이다.

(2) C, E의 각 진술의 신빙성에 대하여

가사, C, E의 각 검찰 진술과 'E의 배임수재 등 사건' 및 'C의 배임수재 등 사건'에서의 각 진술이 임의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들의 진술은 물론 E의 원심법정에서의 진술을 신빙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 (가) 먼저, 이 사건 뇌물을 지급하기 위하여 조성한 돈에 대한 관련자의 진술 내용을 검토하여 본다.
- ① E 등은 1995. 1.경 주식회사 F의 당시 대표이사인 AJ 및 당시 서울사업본부장인 AK과 사이에 '주식회사 F에서 학교 부지를 매수하여 그 곳에 아파트 및 백화점을 건축하는 등 재개발을 하는 한편 같은 구에 소재한 다른 부지를 물색하여 위 학교 건



물을 신축하기로'합의한 후 위 학교 부지 4,407.86평에 대한 매매대금을 절충하면서 F 측에서 학교법인에 지급되는 매매대금과는 별도로 금 80억 원을 지급하는 대신 위 학교 부지 매매대금을 적정 시가인 금 440억 7,860만 원(평당 1,000만 원)보다 저렴하게 금 308억 5,502만 원(평당 700만 원)으로 낮추기로 합의를 하여 그와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F측에서 AD에게 현금 50억 원과 약속어음으로 30억 원을 지급하였다가 F측에서 세금처리에 따르는 비용 5억 원과 학교 부지 앞 도로변에 위치한 대지의 매입대금 중 10억 원을 E 측이 부담해 줄 것을 요구하여 위 약속어음 중에서 15억 원만 결제되어 F측에서 학교법인측으로 넘어간 금액은 65억 원이었다(위 수사기록 6책 5권 526 내지 639쪽 참조).

- ② AD은 F로부터 뒷돈을 받은 일로 인하여 대구지방검찰청에 1998. 6. 25. 소환되자 그날 새벽 04:30경 AL 호텔에서 C, E, D, AK 등과 만나 AD이 F로부터 받은 돈 65억 원을 모두 E에게 지급한 것으로 의논이 되어, AD, E, D은 1998. 6. 25. 및 그 달 26.과 29.에 조사를 받으면서 F로부터 받은 돈은 약정한 80억 원 중 65억 원이고 이는모두 현금으로 받았으며, 나머지 15억 원은 F의 사정이 어려워 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고('E의 배임수재 등 사건'의 제3회 공판조서, 위 수사기록 6책 5권 526 내지 639쪽 참조), E, C 및 AD에 대한 배임수재 공소사실도 이에 터잡아 작성되었다.
- ③ 그런데 E는 배임수재로 1998. 7. 3. 기소된 이후인 그 달 9.과 10.에 작성한 진술조서에서 'F로부터 받은 돈은 65억 원이지만, 자신이 실제로 받은 돈은 35억(또는 40억 원)이고, 나머지 30억 원은 AD이 사용하였고 전달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을 바꾸었고, 이에 대하여 AD은 그 달 14. 자신이 F로부터 받은 65억 원의 계좌를 제시하면서 이 돈을 받아 전부 현금으로 E에게 전달하였다는 주장을 계속하면서 E는 50억



원 이하가 되면 형량을 낮출 수 있다는 떠도는 소리를 들었는지 AD에게 25억 원 정도 를 떠넘기려한다고 주장하였다가(위 수사기록 6책 6권 392 내지 426쪽 참조), 그달 21. 에 작성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에서 갑자기 검사로부터 로비에 대한 추궁을 받게 되 자, '자신은 관여를 하지 않아 잘 모르나, 공원녹지 지역을 해제하고 학교를 신축하려 면 관할 지역구 국회의원과 Q구청장과는 사전 협의가 있어야 가능한데 돌아가는 눈치 가 당시 R선거구 국회의원인 A 의원과 AM Q구청장에게도 로비를 한 것으로 사료된 다.'고 진술하는 한편, 검사가 F로부터 받은 리베이트 자금 중 재단이사장 E에게 주지 않고 보관하고 있던 25억 원으로 로비를 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자신은 전액을 전달 하였다'고 하면서도 'E가 65억 원을 받은 것으로 구속되어 있을 때 C, D과 함께 변호 사 사무실에서 E가 빨리 풀려 나올 수 있는 방법을 상의하였는데, 그때 자신이 65억 원의 자금 추적을 하면 사용처가 금방 밝혀질 것이므로, 재단에서 소비한 돈을 제외하 고는 교육청이나 구청에 로비한 사실이 있으면 전부 털어놓고 검찰에서 선처를 받자고 제의하였더니, 처음에는 C, D이 완강히 부인하다가 다시 E의 선처를 위하여 로비 내역 을 각자 2명씩 털어놓자고 하였더니 한번 생각하여 보겠다고 한 다음 그 다음날 변호 사 사무실에서 앞으로 사업을 계속하려면 털어놓을 수 없다.'면서 거절하였다고 진술하 였다(위 수사기록 6책 1권 264쪽 이하 참조).

④ C는 긴급체포된 후 1998. 10. 3. 제1회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위 AD, E, D 및 F측의 U, AN 등의 80억 원 약정 진술과는 달리 '평당 150만 원씩 65억 원가량을 비자금으로 조성하기로 하고 AD을 통하여 F에 요구하였다.'면서, '이 돈 중 주식회사 F에서 비자금을 조성하려면 세금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 비용 명목으로 5억 원, 학교 부지 앞 도로변에 위치한 대지의 매입대금 중 10억 원을 E 측이 부담하여 달라고 요구



하여 50억 원을 받기로 최종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졌고, 자신은 50억 원 전부를 AD으로부터 수령하여 그 중 20억 원은 D과 같이 받아 현금으로 E에게 전해주었고, 나머지 30억 원은 혼자서 대부분 수표로 받아 이 중 5억 원만 E에게 전하여 주고, 나머지는 자신이 보관하다가 11억 원은 재단을 위하여 사용하고, 나머지 14억 원은 개인이 착복하였으며, E와 D은 25억 원만 받고도 50억 원의 영수증을 작성하여 AD에게 주었다고 진술하였다(위 수사기록 6책 1권 488쪽 이하).

⑤ 그런데 앞서 본 대로 30억 또는 40억 원만 수령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한 E는 또다시 검찰에서 1998. 9. 12. 조사를 받는 과정 및 자신의 배임수재 재판과정에서 AD 으로부터 받은 금액이 32억 4천 만 원이라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며, 1998. 10. 8. C와 대 질하면서, "저도 방금 조사를 받기 전에 C로부터 들으니(따라서 C, E, D은 검찰 조사 시 수시로 진술 내용에 대하여 말을 맞춘 것으로 추정된다.), 50억 원을 받아 위와 같 이 사용하였는데, 전에는 32억 4천만 원만 받았다고 거짓말을 하여 죄송하다고 하였는 데, C의 말을 들어보니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인정하겠다."고 하였고, D도 E와 같이 C 의 진술을 인정하겠다고 진술하였으며(위 수사기록 6책 1권 539쪽 이하 참조), E는 원 심 법정에서는 '뒷돈을 받기로 약정한 것은 모른다.'고 진술하고 '뒷돈 중 얼마를 수령 하였나요'라는 질문에는 'C로 인해서 얼마 썼다는 얘기만 들었고 알지도 못한다. C 손 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증인의 손에 1원이라도 들어왔는지 잘 모르겠다.'고 진술하는 등 (공판기록 331쪽) 진술 내용이 여러 차례 바뀌고 있고, D도 위 진술 이전인 1998. 9. 12.에는 'F로부터 받은 뒷돈 중 일부를 로비자금으로 조성한 사실이 있는데, 재단이 받 은 자금 32억 4천 만 원 중 30억 1천 만 원은 재단운영과 관련한 경비로 사용하고 나 머지 2억 3천만 원은 로비자금으로 조성하여 C가 관리하면서, 피고인들에게 학교 이전



과 관련하여 돈을 주었다.'고 진술한 적이 있었다(위 수사기록 275 내지 276쪽).

- (나) 다음, 이 사건 수사 경위 등에 대하여 살펴본다.
- ① N은 학교부지 이전 사업을 추진하면서 1996. 3, 28.경 서울시 교육청에 학교 이전계획승인신청을 하자 위 학교부지 이전대상지 부근에 거주하는 G, AO 주민들 일 부 및 환경단체에서 녹지를 훼손한다는 이유로 반대를 하는 등 민원이 야기되었고, 당 시 AP정당 R선거구 지구당 부위원장 겸 AQ 모임 공동대표인 AR은 AS, AT 등 AQ모 임의 다른 공동대표와 함께 대구지방검찰청, 대검찰청,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청와 대 등에 청원서를 제출하였는바, 1998. 7. 11. 대구지방검찰청에 제출된 'E I고 재단이 사장의 비리 소명 청원서'에 의하면, 'I고 재단이사장 E가 1998. 6. 28. 구속된 사건과 관련되었을 개연성이 있는 내용을 제보하니 사학을 좀 먹는 행위를 한 피의자와 공조 하여 부정에 개입하였을 것으로 인지되는 정치인, 행정관청의 비리 의혹을 명확히 가 려 줄 것을 청원한다.'면서 O구청장 AM과 A 의원은 I학교재단 편에 서서 학교이전을 계속 고집함으로써 주민들로부터 I고 재단이사장 대역이라는 평가를 받아 왔는데, 특히 I고 재단이사장 E는 재단의 상임이사를 특정정당의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게 하면서 동 정당 소속 정치인들과 구청장에게 로비를 하도록 하였다.'는 취지로 되어 있는바, 위 AR은 당심 법정에서 '진정서를 제출하게 된 구체적인 계기는 녹지 공원 훼손에 대하 여 반대를 하는 한편 AU그룹의 부도와 I고 이사장의 구속 보도를 보고 정치적으로 반 대 입장에 서 있던 AM 구청장이나 A 의원에 대하여 압박과 타격을 가하자는 것이었 다.'고 진술하였다.
- ② AV는 1998. 7. 14.자 신문 2면에 'AW AX총장은 AU그룹 U회장에 대한 조사과 정에서 U회장이 일부 정치인에게 돈을 건넸다고 진술했으나 정치인 수사를 신중히 하



기 위해 계좌추적을 통해 물증이 확보된 뒤에야 이들 정치인을 소환조사하겠다고 밝혔 다. 이는 U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야권 중진 A·B씨 등 정치인에 대 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음을 사실상 확인하는 것이다'는 내용의 기사를 싣고(공판기록 767면), 1998, 9, 4,자 신문 1면에 '사정당국은 F U 회장의 비자금 사건과 관련해 서울 지역의 W정당 중진 B, A 두 의원이 거액의 로비자금을 받은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4 일 알려졌다고 밝혔다.'는 내용의 기사(공판기록 773면)를 실었는데, 위 기사를 작성한 AY 기자는 원심에 제출한 취재경위서에서 '위 사정당국의 한 관계자는 검찰 관계자이 며 그가 진술한 시점은 기사작성 하루 전인 1998. 9. 3.쯤이다. 당시 정치권에서는 "다 음 사정 대상은 야당의 수도권 중진'이라는 설이 파다했고, 이를 취재하던 중 한 정치 권 인사로부터 'F사건과 관련된 서울 Q의 두 의원'이라는 구체적인 말을 들었는데, 이 를 위 검찰관계자에 직접 확인하였다"라고 밝히고 있으며(공판기록 761면), 당심에 제 출한 진술서에서는 그 사정당국자는 검찰관계자가 아니라 국가정보원 소속 인사라고 하면서, '그 사정당국의 관련자로부터 정보를 입수해 취재에 들어갔다. 당시 1998. 8. 31. AZ 의원이 소위 BA사건에 연루됐다는 발표가 나오면서 W정당 의원들에 대한 사 정설이 나돌았고, 수도권 중진인사들에 대한 수사착수 소문이 정치권과 사정당국 주변 에서 나돌았다. 당시 사정당국 관계자는 "F사건 관련 서울 Q의 두 의원이며, I고 부지 이전 관련"이라고 지목해 주었는데, 마침 대구지검에 아는 사람이 있어 확인취재를 한 다음,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A, B 두 의원의 이름을 명시하지 않고 "서울 지역의 W정 당 중진 B, A 두 의원"이라고만 기재하여 보도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다) 그러므로 보건대, 모름지기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증거는 법관으로 하여금 합 리적 의심을 배제하기에 족한 증거여야 하며, 수뢰죄에 있어서 수뢰자로 지목된 피고



인이 수뢰사실을 시종일관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물증이 없는 경 우에 증뢰자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증뢰자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 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하고,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진술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 등뿐만 아니라 그의 사람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특히 그에게 어떤 범 죄의 혐의가 있고 그 혐의에 대하여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를 이용한 협박이나 회유 등의 의심이 있어 그 진술의 증거능력이 부정되 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는 경우에도 그로 인한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등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2.6. 11. 선고 2000도5701판결 참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①C, E는 자신들의 배임수재 사 건으로 구속된 후 모두 몸이 불편한 상태에서도 판결 직전 보석허가로 석방될 때까지 수십 회 검사에게 소환되어 육체적 피로와 심리적 압박감 속에서도 자신들이 무겁게 처벌받을 지도 모른다는 궁박한 상태에서 허위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점, ②F로부터 받은 뒷돈의 규모와 재단에 전달된 금액에 대하여 C, E는 모두 AD 등과 뒷돈 금액은 80억 원이고, 그 중 65억 원을 받아 그 전부를 재단에 전달하였 다고 진술하기로 입을 맞추어 놓고도, 그 뒤 C, E는 물론 D조차도 자신들의 이해관계 에 따라 뒷돈의 총 금액과 재단에 전달된 금액에 대하여 서로 다른 진술을 함으로써 그들은 자신의 이해관계 여하에 따라서는 언제든지 진술을 번복하는 성향이 있는 것으 로 보이는 점, ③이 사건 수사 경위는, E가 65억 원에 대한 배임수재로 기소된 후 1998. 7. 10.경 검찰에서 자신이 받은 돈은 35억 내지 40억 원이라고 진술을 바꾸고, 그 3일 뒤인 그 달 13.에는 제1회 공판기일에서 받은 돈은 32억 4천만 원이라고 진술하였



고, 1998. 7. 11.에는 AP정당 R선거구 부위원장 겸 AQ모임 공동대표 AR 등이 대구지 방검찰청 등에 피고인 A과 AM 구청장의 실명을 거명함과 동시에 피고인 B를 암시하 는 직책을 기재하여 정치인 등의 비리의혹을 가려달랐고 청원하였으며, 1998. 7. 21.에 는 AD이 자신은 관여하지 않았다면서도 C가 지역구 A 국회의원과 AM 구청장에게 로비하였을 것으로 추측된다고 진술하였으며, 바로 그날 C가 배임수재 혐의로 지명수 배되었고, 1998. 7. 14.자 AV에는 야권 중진 A·B씨 등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는 기사가 보도된 점, ④위와 같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증뢰 하였다는 구체적인 진술은 그 전에는 없었다가 E가 시인한 1998, 9, 11.(E의 원심 법정 진술) 또는 그에 대한 진술조서가 작성된 1998. 9. 12.에야 밝혀졌음에도 1998. 9. 4. AV에 F U 회장의 비자금 사건과 관련해 서울 지역의 W정당 중진 B, A 두 의원이 거 액의 로비자금을 받은 혐의를 포착하였다는 내용의 기사가 실렸으며, 최초로 위 기사 를 제공한 곳이 국가정보원이고, 대구지방검찰청 관계자가 이를 확인한 사정에 비추어 어떤 정치적인 목적에 의하여 처음부터 피고인들을 염두에 두고 수사가 시작되지 않았 나 하는 의혹을 떨쳐 버릴 수 없는 점, ⑤C, D 등은 E가 구속되었을 당시 E의 형사처 벌을 가볍게 하는 방편으로 국회의원이나 관할관청, 교육청 등에 로비 내역을 이야기 하면 검찰로부터 선처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예상할 수 있었던 점, ⑥C는 자 신이 사용하였다고 진술한 25억 원의 출처와 관련하여 검찰로부터 추궁을 받고 형사처 벌을 받게 될 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가능한 한 자신이 N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부 풀리는 것이 유리한 입장에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⑦C가 피고인 A 부분에 대한 진술과 관련하여, '1996. 3. 말경에 R선거구 지구당 사무실에서 현금 1,000만 원을 주었으며, 두 번째도 1996. 4. 초순경 같은 장소에서 현금 2,000만 원을 주었다. B 의원에게 선거자금



을 지원하였기 때문에 A 의원에게도 지원하기로 D과 상의하여 3,000만 원 정도를 지 원하여 주기로 하고, 금고 속에 보관하고 있던 현금 10,000원 권 3,000만 원을 007 가 방 중간크기에 넣어 전달하여 주려고 하였는데 당시 A 의원은 지역구에서는 기반이 확고하였던 관계로 S정당 후보자 중에 취약 지역인 강원도, 부산 등지에 지원유세를 자주 나가는 바람에 지역에 거의 없다시피 하는 바람에 바로 전달하지 못하고, 007 가 방에 넣어 두었던 돈을 다시 꺼내어 금고에 넣어 둔 후 위 때쯤에 A 의원이 지구당 사무실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1,000만 원은 10,000원권 100다발로 10다발을 1호 대 봉 투에 넣어서 직접 사무실로 가서 A 의원에게 선거자금으로 쓰시라고 하면서 주었고, 두 번째로 2,000만 원은 금고에서 현금을 꺼내어 종이 쇼핑백에 돈을 넣은 후 직접 지 구당 사무실로 가서 A 의원에게 전달하여 주었다(피고인 A에 대한 수사기록 6책 1권 434면 이하).'고 진술하고 있으나, C는 처음에는 1996. 4. 7.경 돈을 주었다고 진술하여 E의 4. 2. 김포공항에서 돌아오는 길에 피고인 A에게 돈을 주었다는 보고를 받았다는 진술과 배치되어 수사검사와 상의하여 1996. 4. 초로 정정하였을 뿐만 아니라(공판기록 1043면), D의 'B에게 선거자금을 지원하여 주었으니 A에게도 돈을 전하기로 C와 이야 기를 하였고, 이에 따라 C가 3,000만 원을 준비하여 학교로 와서 승용차 트렁크에서 007 가방을 꺼내어 보여주면서 현금 3,000만 원이 들어 있다고 한 적이 있는데 그 때 는 피고인 A이 지원유세를 나가는 바람에 함께 가서 3,000만 원을 전달하지는 못하였 고, 그 후 C가 피고인 A의 지구당 선거사무장에게 전달하였다'는 진술과도 다를 뿐만 아니라 C 스스로 피고인 A이 강원도, 부산 등지에 지원유세를 자주 나가는 바람{실제 로 피고인 A의 후보일정표에 의하면 국회의원 선거기간(1996. 3. 26.부터 1996. 4. 10.까 지) 동안 꽉 짜인 일정으로 한가하게 지구당 사무실에 있을 형편이 아닌 것으로 판단



된다.]에 사전연락까지 하고 찾아갔는데 만나지 못한 상황에서 두 번씩이나 피고인 A의 지구당 사무실로 찾아가 피고인 A에게 직접 돈을 전달하였다는 것은 상식에 반할뿐만 아니라 진술 자체에서 앞 뒤가 모순되고, E의 진술도 자주 번복되거나 모순되는점,⑧ E는 최초 수사기관에서 AD으로부터 65억 원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찰의수사과정에서 그 사용처를 둘러댈 수 없어 검사로부터 심하게 추궁을 당하였고(수사기록 6책 2권 15면 이하), 자신이 구속됨으로써 구속을 면한 D의 신병처리 및 형사처벌문제 등과 관련하여 심한 정신적 갈등과 고통을 겪었을 것임을 쉽사리 수궁할 수 있는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C, E의 위 각 진술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신빙성이었다고 할 수 없다.

한편, E의 진술은 C나 D이 피고인들에게 돈을 전달하는 것을 직접 목격한 사실을 진술한 것이 아니고 C나 D으로부터 들은 말을 진술한 것으로서 C 및 D의 진술을 신 빙할 수 없는 이상 이 점에서도 그의 진술도 믿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

(3) D의 진술의 신빙성에 대하여

마지막으로 D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보건대, ① D은 미국 BB 대학 경영학과와 같은 대학원 경영학과 MBA과정을 졸업하고 1989. 5.경 귀국하여 1990. 7. 1.부터 부친인 AC이 재단이사장으로 있던 I고 서무과장으로 근무하였고, AC은 학교시설이 노후되고 교육시설 면적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게 되는 한편 인근 O 일대가 환락가가 되면서 학교를 이전할 수밖에 없게 되자 학교부지 이전사업을 추진하던 중 1987.경 중풍으로 쓰러진 후 1992.경 갑자기 사망하게 되어 모친인 E가 재단이사장으로 취임하고, 집사역할을 하던 C가 재단이사가 되면서 1994. 말경부터 본격적으로 학교이전 업무를 진행하면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어 우울과 불



안감이 발생되고 이로 인하여 술을 많이 마시게 되어 1996년경부터는 알코올 의존증으 로 치료를 받기 시작하였고, D은 모친 및 C와 N 업무를 보면서 학교이전업무를 추진 하던 중 배임수재 혐의로 E가 구속된 후 자신도 구속될 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그 다음 날부터 1998. 9. 초까지 피해 다니면서 모친의 구속에 마음 아파하였으며 불안하고 초 조하여 낮에도 소주를 마시기 시작하였고 술에서 깨어나면 우울하고 자괴감이 들어 다 시 술을 마시는 생활을 하던 중 대구지방검찰청에 자진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는데, 당 시 수사관과 검사로부터 심한 모멸감을 느끼게 되었고 모친의 구속과 재판과정 때문에 어머니와 재단에 대한 죄책감이 지속되어 알코올 의존 및 우울 장애가 심화되었고 현 재도 지속적으로 어머니와 재단에 대한 죄책감을 호소하고 있는 점(공판기록 674면, 당 심의 BC병원 및 BD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 회보결과, D에 대한 진단서 참조)에 의하 면, D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어머니와 재단에 대한 죄책감과 자신이 구속될 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으로 밤낮으로 술을 마시고 지내는 등 비정상적인 상태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에서 D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가혹행위에까지 이르지는 않는다고 하더라고 심한 모멸감을 느끼도록 정신적 고통을 준 사실이 인정되는 바, 그러한 심리 상태에서 한 진술이라면 자신 및 E를 위하여 검찰이 유도하는 바에 따라 진술하였을 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들어 허위로 진술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② 피고인 B 부분에 대한 D의 진술에 관하여 보면, 수사기관에서는 ① 1998. 9. 12.에 '1996. 3. 말경 토요일 10:30경에 C가 승용차 트렁크에서 현금 4,000만 원이 든 빨간색 쇼핑백을 보여 주었으며, 그 후 11:00경 C와 함께 위원장실로 들어갔는데 소파에 앉아 있던 피고인 B 가 반갑게 맞아 주었고, C가 자신을 재단이사장의 아들이라고 소개하여 본인이 인사를 하고 명함을 건네주면서 학교를 이전하려면 여러 가지로 신세를 많이 져야 하니 잘 부



탁드린다는 취지로 말했으며, 옆에 있던 C가 재단에서 지원하는 돈이라고 하면서 위 쇼핑백을 건네주었고, 이에 피고인 B가 자기에게 고맙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고 진술 하고, ① 피고인 C에 대한 4회 피의자신문조서(C, D, E와의 대질신문)에서는 '직원 사 무실을 통해 의원 방으로 들어갔는데 소파에 막 앉을 무렵 B 의원이 회의실에서 통하 는 문으로 들어와서 인사를 하였다. 당시 B 의원은 약간 베이지 색의 바지를 입고 밤 색의 가디건을 입고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다가(위 수사기록 555면), © 피 고인 B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C, D, E와의 대질신문)에서는 'C와 출입문으로 들어가 니 1분이 채 되지 않은 잠시 후 B의원이 제가 들어간 쪽이 아니라 맞은 편 회의실 문 에서 들어오셨다. 당시 상황 중 기억나는 것은 B의원이 상의 겉옷은 입지 않고 밤색 내지 노란색 계통의 가디건을 입고 있었고, 바지는 밤색 계통을 입고 계셨던 것으로 기억난다. C가 저를 I고 재산이사장 아들이라고 소개를 하였고, "학교이전문제를 잘 부 탁드립니다. 선거에 이기십시오"라고 말한 후 나왔고, C는 미리 준비해 간 현금 4,000 만 원이 든 쇼핑백을 B 의원에게 전달하고 자신이 먼저 나오고 C가 약 1분 후에 나온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는(위 수사기록 613면 이하) 등 D이 피고인 B의 사무실을 방문한 일자(최초에는 1996. 3. 말경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검사는 처음에 1996. 3. 31. 경으로 공소를 제기하고 있다), 방문 당시 피고인 B의 옷 색깔, D이 들어 갈 때 위 피 고인이 쇼파에 앉아 있었는지 여부, D이 있는 자리에서 쇼핑백을 건넸는 지 여부 등에 관하여 진술이 서로 엇갈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원심에서 '피고인 B의 사무실에 들어 갔을 때 통상 다른 사무실에서 볼 수 없었던 특이한 점이 있었는지의 여부에 관한 질 문에 위 피고인의 복장 이외에 기억나는 것이 없다고 답변하고 있으나(공판기록 314 면), 위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2호증의 1 내지 9호증(공판기록 358면 이하)의 각 영상



에 의하면 피고인 B의 사무실은 사방이 책으로 가득차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점에 대하여 전혀 기억을 못하고 있고, D은 수사기관에서 진술하면서 '사무실을 통하 여 비서실로 통하는 문으로 위 피고인의 집무실에 들어갔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위 문 은 총선 이후에 벽을 터서 만든 것으로서 1996. 3. 30.경에는 사무실에서 비서실로 통 하는 출입구가 존재하지 않았던 점(공판기록 559면 이하, 공판기록 357면 [선거구 지구 당 사무실 구조도 참조), D은 피고인 B의 사무실에 불과 2 내지 3분만 체류하였다가 곧바로 나왔다는 것인데, 사무실 사방에 가득찬 책은 기억하지 못하고, 2년 3개월 이상 전에 잠시 보았던 피고인 B의 복장 상태를 세세히 기억한다는 것은 우리의 경험칙상 쉽사리 납득할 수 없는 점, ③ 피고인 A 부분에 대한 D의 진술은, C가 위 피고인에게 돈을 전달하는 것을 직접 목격한 사실을 진술한 것이 아니고 C로부터 들은 말을 진술 한 것인데, C의 검찰 및 'C의 배임수재 등 사건'의 법정에서의 진술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임의성 및 신빙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당시에는 C로부터 '3,000만 원을 한꺼번에 피고인 A의 지구당 선거사무장에게 전달하였다'는 것을 들었는데 C가 이 사건으로 조 사받을 당시 2회에 걸쳐 나누어 3,00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직접 전달하였다'는 사실 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D은 수사기관에서 '총선이 끝난 후 4월 중순경에 서울 송파구 BE건물에서 열린 기념회 행사에 참석하여 명함을 주면서 당선을 축하한 다고 하니 A 의원이 고맙다고 하면서 선거시에 선거자금을 지원하여 주어 고맙다는 인사를 하기에 선거자금이 제대로 전달된 것으로 알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나(위 피고인 에 대한 수사기록 6책 1권 283면), 원심 법정에서 'A 의원이 선거자금을 지원해 주어 고맙다고 하였는지는 기억이 없다. 축하한다고 하자 A의원이 고맙다고 인사를 하였다. A 의원이 증인에게 "선거비용을 도와주어서 고맙습니다"라는 인사를 할 틈이 없었다.



(공판기록 666면 이하, 679면 이하).'고 진술하는 등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D의 검찰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만으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4) 소결

원심이 위 공소사실 1의 나항과 2항에 대하여 유죄의 증거로 삼은 위 각 증거들은 이미 살펴 본대로 임의성이 없거나 신빙성이 없어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고, 그 외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기재와 'C의 배임수재 등사건'의 판결문을 유죄의 증거로 내세우고 있으나, 피고인들은 검찰에서 이 사건 수뢰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어 증거가 될 수 없고, 위 판결문은 C의 피고인들에 대한 뇌물공여 사실(위 판결문 1의 다. 항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에 불과하여 이것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것은 증거의 취사선 택을 잘못하여 사실을 그릇 인정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 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다.

마.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이 법원의 판단

원심 판결의 무죄 부분(위 공소사실 1의 가항)에 대한 원심판결의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 B가 위 학교법인 재단이사 C로부터 금 1,0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고인 B와 C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서의 관계, 위금원 수수의 경위와 정황, 수수된 금원의 액수, 위 금원 수수가 공개적, 공식적으로 이루어진 점, 당시가 4. 11 총선이 임박한 선거운동기간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위



1,000만 원은 C가 선거를 계기로 피고인 B와 친분관계를 맺을 목적으로 제공한 정치자금 내지 선거자금이라 할 것이지 구체적인 청탁의 대가로 제공된 뇌물로는 보기 어렵고, 위와 같은 전후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1,000만 원을 수수할 당시 피고인 B가 위금원이 직무와 관련된 청탁의 대하고 제공된 뇌물임을 인식하였다고도 볼 수 없다고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여기에다가 I고의 이전문제는 당시 국회의원, 구청장, 구의원 등 공직에 입후보를 한 사람은 여・야당을 불문하고 모두 선거공약으로 내세워 당선이 되면 이전문제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하고 있었던 점을 덧붙여보면, 정당하게 보이고, 달리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고 사실을 오인한 위법을찾아 볼 수 없으므로 검사의 이 부분 항소 논지는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의 항소는 결국 이유 있으므로 검사의 각 양형부당의 점에 대한 항소이유에 관하여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항소는 이유 없으나, 그 부분 공소사실은 위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는 부분인 판시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기소되었으므로 피고인 B에 대한 원심 판결도 전부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 2.의 가. 항 기재와 같은 바, 위 2.의 라., 마항의 "피고인들 및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2-10-20

재판장	판사	구욱서	
	판사	이동철	
	다시	하스히	